

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, 사업성 없는 사업을 충분한 사전준비나 계획 없이 추진하고, 실적에만 연연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과욕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.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하수처리시설과 소각시설 등 환경관련시설사업과 광역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의 경우에만 나름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 그 밖에 사업들은 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

4)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방법

① 대상사업

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. 즉, 광역권개발계획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,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에 의한 지구개발사업 그리고, 복합단지 개발사업 등 네 가지이다.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사업 중에서 지역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, 서울특별시장, 광역

시장, 도지사가 민간자본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종합계획심의회(지방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)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정 공고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민자유치계획에는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사업시행 조건 및 방법, 사업제안자의 자격과 선정기준,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, 기타 지역균형개발법시행령 제32조 2항에서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첫 번째로 지방의 대도시와 신 산업지대를 중심으로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(이하 심의회)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.

둘째,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뒤떨어진 낙후 지역(수도권 및 제주도 제외)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. ①낙후지역형으로서 인구증가율, 재정자립도, 지가수준, 제조업 종사자비율, 도로율(면적대비 법정 도로) 중 3가지 이상이 전국 하위 1/5에 속하는 시·군, ②균형개발형으로 광역개발권역 중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, ③노동통